

학 생 회 칙

제정 1986. 10. 23
개정 2014. 10. 08
개정 2015. 12. 09
개정 2018. 03. 09
개정 2020. 06. 11
개정 2021. 02. 16
개정 2023. 03. 13
개정 2024. 09. 09
개정 2025. 12. 01
개정 2026. 03. 0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 ① 본회는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②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자유 민주 연합회이다.
- ③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를 강원대학교 전 학우의 건전한 문화건설의 주체로 세워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중앙동아리 사회발전과 자주화 및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자치기구이다.

제2조 (회원의 자격)

강원대학교 중앙동아리의 회원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환학생을 제외한 강원대학교 학부생
- ② 신규등록 및 재등록서류에 명명된 자
- ③ 중앙동아리 회원은 휴학생을 포함.
- ④ 강원대학교 중앙동아리는 모든 학부생에게 열려있다.
- ⑤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상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 (관리)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의 관리범위는 강원대학교의 중앙동아리시설로 하며 중앙동아리 시설의 범위는 세칙에 따른다.

제4조 (활동목표)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자유를 지향하며, 회칙 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적 중앙동아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강원대학교 학칙은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회칙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 (구성원)

- ①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임원은 강원대학교 중앙동아리 회원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중앙동아리 회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중앙 동아리의 요건)

- ① 일부 복수 중앙동아리의 설립은 제한되며 중앙동아리의 설립은 보장된다.
- ② 중앙동아리는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③ 중앙동아리는 강원대학교 전 학우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중앙동아리는 본회의 보호를 받으며, 본회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⑤ 중앙동아리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본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 및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운영위원회
4. 집행부
5. 상임위원회
6. 분과위원회
7. 회장은 필요시 부회장의 동의 하에 특별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중앙동아리의 권리와 의무**제9조 (중앙동아리회원의 인권보장)**

모든 중앙동아리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총동아리연합회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구성원의 권리)

- ① 모든 중앙동아리회원은 평등하며 존엄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강원대학교 학생은 본회의 제명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동아리 가입, 탈퇴 및 중앙동아리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때, 휴학생과 군 휴학생 등 강원대학교 전체 학우들을 구성원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권한)

- ① 강원대학교 공식 중앙동아리로 홍보할 수 있다.
- ② 옥외홍보는 정해진 홍보 기간에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의 기간에 옥외홍보를 할 경우 경중을 고려하여 주의 또는 경고를 부여한다. 옥외 홍보를 제외한 홍보는 개별 동아리의 자율에 따른다.
- ③ 연합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중앙동아리 시설의 관리)

- ① 중앙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가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중앙동아리 시설은 1개의 중앙동아리가 1개의 동아리방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아리방에 대한 책임 및 사용권리를 가진다.
- ③ 추가 시설(중앙동아리 창고 등 기타 시설)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의 권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④ 중앙 동아리방에 관련된 운영사항은 관련 세규를 따른다.

제13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권)

중앙동아리의 대표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 (청원)

- ① 중앙동아리 구성원은 총동아리연합회에 문서, 구두, 유무선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③ 안전에 대한 청원은 제39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구성원의 배상)

총동아리연합회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회원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중앙동아리의 의무)

중앙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① 학기 당 한 번의 재등록비 납부 및 재등록 서류의 제출
- ② 학기 말 중앙동아리 평가제에서의 중앙동아리 평가
- ③ 강원대학교 및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세규 준수
- ④ 위 사항들은 각각의 세규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중앙동아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중앙동아리 대표자는 정기총회에 참석의 의무를 진다.
- ② 1년 3회 이상 불참 시 경고이며 4회 불참 시 제명된다.

- ③ 중앙동아리의 대표자 부재 시 부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 ④ 중앙동아리의 대표자와 부대표의 부재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은 학기당 1회만 유효하다.

제18조 (중앙동아리 관리법규)

- ① 중앙동아리 관리에 관한 법규는 세규를 두어 관리한다.
- ② 중앙동아리 관리에 관한 세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세규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 할 수 있다.

제3장 총동아리연합회 조직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19조 (지위)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의 대표이며 중앙동아리의 보전·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본회의 행정권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을 수반으로 하는 총동아리연합회에 속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은 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의장, 부의장이 된다.
- ④ 각 기구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 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20조 (선출)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은 중앙동아리 대표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은 과반수의 중앙동아리 대표자들의 투표 중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자가 선출된다.
- ③ 단독 출마 시 과반수의 중앙동아리 대표자들의 찬·반중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은 자가 선출된다.
- ④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의 회원 및 본회의 임원인 자에 한해서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1조 (후임)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5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이 궐위된 때 또는 총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잔임기간 120일 이상일 경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22조 (임기)

총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3조 (직무대행)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국장(경험, 연령, 의지를 고려) 순으로 이를 대신한다.

제24조 (업무 및 권한)

총동아리연합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단,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필요 시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에게 업무 및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를 임명한다.
2.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중앙동아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회 투표에 부칠 수 있다.
3.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4. 총회 소집 요구권
5. 회칙 개정 발의 및 예산결산 심의
6. 기구 신설 통, 폐합권
7. 중앙동아리 및 중앙동아리 대표자 징계 사항에 대한 의결권
8. 상임위원회의 상정사항 의결권
9. 총회의 상정사항 거부권

제25조 (총동아리연합회 대표의 신분보장)

총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 탄핵 또는 의결에 의한 사퇴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제26조 (목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기구이며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27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부회장과 집행부서장(국장)으로 구성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의장이 되고,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28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중앙동아리의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9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회칙개정안·대표자 투표안
4. 예산안·결산·기본계획·총동아리연합회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6. 업무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7.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8. 기타 상임위원회와 중앙동아리 대표자 외 중앙동아리 회원이 제출한 사항

제30조 (의결)

제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부

제31조(목표)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제32조(구성)

- ① 집행부는 회장단을 제외한 각 국장과 차장으로 구성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국장
 - 1. 총동아리연합회 국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임명한다.
 - 2. 총동아리연합회 국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앙동아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3. 집행부 각 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4. 집행부 각 국장은 총회, 상임위원 등의 과반수의 출석 요구 시 출석하여야 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 차장
 - 1.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2.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 3.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해당 부서 국장의 명령을 받아 직무에 임한다.
 - 4. 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기초 기획을 실시한다.

제4장 총동아리연합회 의결기구

제1절 총회

제33조 (목표)

총회는 본회의 활동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34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집행부와 각 중앙동아리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대표자(회장 또는 제17조에 의거한 위임장을 가진 위임자)로 구성한다.

제35조 (입회권)

입회권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속한다

제36조 (개회)

- ① 정기총회는 연 4회 집회하며, 임시총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 또는 상임위원 중 과반수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개회한다.
- ② 정기총회를 개회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의장은 날짜와 안건을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최소 이틀 전에 의장은 날짜와 안건을 공포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2/3 이상이 출석해야 정기총회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제37조 (의장)

- ① 정기총회는 의장 1인을 선출한다.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궐위된 때 또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의장 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국장(경험,연령,의지를 고려) 순으로 의장 역을 대리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의장 1인을 선출한다. 의장의 선출 방식은 정기총회의 선출방식을 따르나, 임시총회의 안건이 총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탄핵안일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의장 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38조 (의결)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중앙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 기권은 반대에 속하며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기권이 없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 그 안건은 또한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안건상정)

- ① 총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아래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중앙동아리 대표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2. 상임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3. 2개 이상의 동아리로 구성된 중앙동아리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 ③ 아래 각 호의 경우 총회에서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1. 중앙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청원
 2. 5개 이상의 동아리로 구성된 중앙동아리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제40조 (회의 결과)

- ① 총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 중앙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에 대해 추후 중앙동아리 대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개한다.

제41조 (회칙 개정안 발의)

총동아리연합회와 상임위원회, 중앙동아리 대표자는 회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 (총회의 무산)

- ①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불가능한 경우 상임위원회가 총회의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위와 동일한 사유로 상임위원회가 2회 이상 무산되었을 경우 상위기구의 업무 및 권한은 운영위원 회가 대행하며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3조 (회칙안 적용)

- ①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안은 반드시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한다.
- ② 의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회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 (감사)

- ① 총동아리연합회에 대한 감사 권한은 감사특별위원회에 이관한다.
- ② 직전 학기 총동아리연합회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45조 (청문)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46조 (탄핵 소추)

- ① 총동아리연합회회장·부회장·임원이 회칙을 위배한 때에는 총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불 요식 행위이다. 그 의결은 중앙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발의와 중앙동아리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2절 상임위원회

제47조 (목표)

- ①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이다.
- ② 상임위원회는 중앙동아리 회원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회칙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회장과 의장의 요구나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다.

제48조 (구성)

총동아리연합회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분과장, 분과장 정원 이하의 집행부서장으로 구성된다

제49조 (효력 발생)

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상임위원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50조 (업무)

- ① 감사특별위원회 이관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 ②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③ 회칙 개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 ④ 징계안을 발의하며 중앙동아리 및 회원의 징계를 결정한다.
- ⑤ 총회가 무산되었을 시 대표자 회의의 업무 및 권한을 의결, 집행하고 이를 추후 보고할 수 있다.
- ⑥ 기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의 심의 의결

제51조 (권한)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소집 요구권
2.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권
3. 징계안 발의
4. 각 중앙동아리의 행사 승인권
5.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절 분과위원회

제52조(목표)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 운영 기구이다.

제53조(구성)

- ① 분과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서장 1인, 분과위원 장(이하 분과장), 각 동아리 대표자로서 구성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다.

제54조(분과장 선출)

- ① 분과장은 각 반기 첫 분과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분과장의 임기는 선출된 직후부터 각 반기 첫 분과회의 전까지로 한다.
- ③ 분과장의 입후보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중앙동아리 활동을 한 학기 이상 한 자
 2. 악폐습 관련 징계에 연루되었던 적이 없는 자
- ④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여 상임위원이 된다.
- ⑤ 분과장은 분과의 제반 활동을 수렴하여 이를 수행한다.
- ⑥ 분과장 후보가 없을 시 회장의 재량으로 선출한다.
- ⑦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분과장이 속한 동아리의 대표자가 대리한다.
- ⑧ 분과장이 임기의 70% 이상 수행했을 경우 분과장과 총동아리연합회와의 호혜적 관계는 유지된다.

제55조(분과장의 권한과 책임)

- ①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 ③ 소속 분과 동아리에 분과장의 책임하에 주의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④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대표자로서 분과 소속 동아리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행한다.
- ⑤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대표자로서 중앙동아리 대표자들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상임위원회 성실 출석 의무를 진다.
- ⑦ 분과 소속 동아리 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제56조(운영 및 소집 기간)

- ① 본회는 봉사분과, 교양학술분과, 체육분과, 종교분과, 취미전시분과, 공연예술분과를 둔다.
- ② 분과의 신설, 통폐합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총회에서 의결된다.
- ③ 분과 회의는 의장이 한 달에 한 번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정이나 특별한 상황의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7조(분과위원회 업무 및 권한)

- ①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을 수렴하여 이를 조직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
- ② 각 분과에 속한 동아리의 제반 활동을 심의한다.
- ③ 분과장 선출권 및 해임권을 가진다.
- ④ 기타 분과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⑤ 해당 분과의 분과장 보궐 시 분과 회의를 통하여 재선출한다.

제58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반으로 의결한다.

제5장 중앙동아리 등록

제59조(정의)

“등록”이란 동아리가 본 회의 중앙동아리로 가입 및 그 직위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제60조 (중앙동아리 등록기준)

- ① 강원대학교의 전 학우를 대상으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원은 25인 이상으로 하고 5개 단과대학(독립학부) 이상이어야 하며 한 단과대 소속 회원이 과반 수 이상이어선 아니 된다. 단, 신규등록 중앙동아리는 30인 이상의 회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중앙동아리 활동계획서와 회칙, 목적 및 취지와 중앙동아리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④ 중앙동아리는 중앙동아리 활동 및 운영을 책임, 관리하는 지도교원 1인을 두며, 이 지도교원으로는 본교 정·부 교수 및 교직원이 해당한다.
1. 본교 교수 및 교직원의 범위는 강원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제61조 (중앙동아리 등록 불가기준)

-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중앙동아리 등록신청이 불가하다.

1. 제적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의 동아리
 2. 외부 정치단체의 지부
 3. 동아리의 목적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4. 영구제명처분을 받은 동아리
 5. 제60조를 충족시키지 않은 동아리
 6. 타 집단이나 단체에 대한 반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제적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의 동아리는 아래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 시 동일한 동아리로 판단하여 등록 신청이 불가하다.
1. 제적 처분 시점의 회장단과 일치할 경우
 2. 제적 처분 시점의 동일한 분과에 유사한 성격을 지닌 동아리인 경우
 3. 동아리 회원 명단의 1/2 이상이 일치할 경우
 4. 동아리 회칙의 내용이 3/4 이상이 유사한 경우
 5. 신규 등록 서약서 내 동아리의 목적이 유사한 경우

제62조 (신규 등록 중앙동아리)

- ① 신규 등록 중앙동아리는 본회에서 접수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후, 총회 투표를 통해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일 때 신규 중앙동아리로 등록이 가능하다
- ② 신규 등록 심사투표가 통과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이를 즉시 공포함과 동시에 등록이 완료되며, 해당 학기부터 중앙동아리로 활동이 가능하다.
- ③ 신규 등록 중앙동아리의 등록시기와 기간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결정한다.

제63조 (변경)

- ① 신규 등록 신청서에 신청했던 동아리의 활동 목적과 다른 활동을 원할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 동아리 목적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 ② 분과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분과위원회와 변경 신청을 원하는 분과위원회에 모두 동아리 분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두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받는다.
- ③ 변경 신청에서 동아리명과 동아리 활동목적은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타 동아리와 같아서 안 된다.
- ④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동아리는 신청서의 내용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며, 변경이 되지 못한 경우 해당 동아리는 기존의 분과, 동아리명, 목적이 유지된다.
- ⑤ 변경은 각 동아리 당 2학기에 1회만 가능하다.

제6장 징계

제64조 (정의)

중앙동아리나 총동아리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중앙동아리 및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징계 할 수 있다.

제65조 (심의회)

자동징계를 제외한 경고 이상의 징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의 권한으로 2차까지 경고한다.

제66조 (징계안 상정)

자동징계를 제외한 경고 이상의 징계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징계 중앙동아리의 대표자는 상임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67조 (징계의 유형)

- ① 징계는 주의, 자동경고, 경고, 자동제적, 제적, 영구제명, 개인 제명으로 하며 경고 이하의 징계는 1 년간 유지된다.
- ② 주의, 자동경고, 경고, 자동제적, 제적, 영구제명은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 ③ 개인제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8조 (주의)

- 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의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직속동아리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의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② 주의는 다른 유형의 징계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다.
-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본회의 적법한 의사결정 및 집행에 비협조하는 경우
 2. 타 동아리에 피해를 끼치는 소란행위
 3. 학내음주
 4. 개인제명 처분을 받은 자를 회원으로 유지하는 경우
 5.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9조 (자동경고)

- ① 자동경고는 행위나 사건 발생 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고 1회를 부과한다.
 1. 주의 3회 누적 시
 2. 옥외홍보기간 미준수 시
 3. 평가제 기준 점수 미달
 4. 상임위원회에서 영구제명 및 제적 안건 부결 시
 5. 정기총회 3회 불참 시

제70조 (경고)

-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중앙동아리시설 내에서의 흡연, 취사
 2. 제출문서 위조
 3. 중앙동아리 설립목적의 무단 변경
 4. 중앙동아리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
 5. 중앙동아리 내 가혹행위 등 악·폐습 발생

제71조 (자동제적)

- ① 자동제적은 행위나 사건 발생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동제적 처리된다.
 1. 경고 3회 누적 시
 2. 중앙동아리 재등록비·서류 및 평가제서류 미제출
 3. 제70조1항5호로 인한 경고가 생길 경우
 4. 한 해에 정기총회에 4회 불참

제72조 (제적)

중앙동아리가 본회의 회칙 및 세규를 위반하거나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할 경우, 또는 중차대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해당 중앙동아리의 제적을 결정할 수 있다.

제73조 (영구제명)

- ① 제72조에 해당하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여 제적처분으로 마땅치 않을 때 상임위원회는 해당 동아리의 영구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영구제명은 중앙동아리뿐만 아니라 비 중앙동아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74조 (개인제명)

- ① 중앙동아리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중앙동아리 차원의 징계로는 해당 사건·사고에 대한 처분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동아리는 총동아리 연합회에 개인제명을 요 청할 수 있다.
- ② 위의 요청에 대하여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하면 해당동아리에 관련자료 청구 및 관련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상임위원회는 관련자료, 관련자 진술, 해당 중앙동아리 회칙 등을 참조하여 심의한다.
- ④ 개인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영구히 본회에 소속된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으며 소속된 모든 중앙동아리에서의 신분이 박탈된다.

제75조 (이의제기)

- ① 징계를 받은 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가 공포된 지 사흘 이내 본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는 2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 기간 동안 징계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③ 이의제기가 부결된 이후 징계를 받은 주체는 재차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제76조 (등록불가)

- ① 제적된 중앙동아리는 1년 동안 중앙동아리로 등록이 불가하고 중앙동아리 이름으로 학내활동이 금지되며 중앙동아리 공간과 비품이 박탈된다.
- ② 영구제명된 중앙동아리는 영구히 중앙동아리로 등록이 불가하고 중앙동아리 이름으로 학내활동이 금지되며 중앙동아리 공간과 비품이 박탈된다.

제77조 (징계의 공포)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 ②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제78조 (세칙 제정)

본 장의 내용에 의거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시 징계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79조 (재정원)

- ① 총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본회의 예산과 교비 지원으로 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 ③ 각 사회단체의 중앙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 ④ 특별한 경우 기타의 수입 방법을 대표자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80조 (회기)

총동아리연합회의 회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81조 (예산 결산)

결산은 매 반기 정기총회를 통하여 반기 동안의 집행된 예산을 보고한다.

제82조 (예산의 이월)

매 회계 기간의 흑자분은 다음 회기 예산으로 넘겨진다.

제83조 (집행)

예산심의, 편성된 내용을 회장 결재 후 담당 국장이 집행한다.

제8장 회계 감사

제84조 (권리)

- ① 총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가 회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업무와 활동을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는 위 항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제85조 (구성)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②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서장 1인이 맡으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③ 중앙동아리에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임기의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구성하며, 부위원장을 제외한 집행부원 2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해당 동아리 임원 3인, 중앙동아리원 3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상임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3인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소속 동아리 임원 혹은 본인으로 구성되며, 중앙동아리원 3인은 상임위원회

소속 중앙동아리와 겹쳐서는 아니된다.

- ④ 감사위원은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한 학기의 개강 시점부터 다음 학기의 개강 전으로 한다.

제86조 (감사 구분 및 시기)

감사는 정기 감사, 임시 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 감사는 매 학기 종강 후 실시한다.
2. 임시 감사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할 시 실시한다. (서면에 의한 제소, 연서, 대자보, 상임운영위원회 발의 시)

제87조 (감사 요령)

- ① 본회 사무국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세칙을 따른다. (단, 감사 첫 시행 시에는 세칙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공포한다.)

제88조 (감사 보고 및 이의제기)

- ① 감사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실시한 후 그 예비 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안내한다.
- ② 예비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규정한 이의제기 기간 내에 감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③ 이의제기가 부결된 이후 이의제기를 시행한 주체는 재차 이의제기할 수 없다.
- ④ 이의제기 심사 후 최종 결과를 작성하여 각 학생회관 게시판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최종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89조 (징계)

감사 거부 혹은 감사 결과 부정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위원장단이 상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시설

제90조 (시설 관리)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중앙동아리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관리사항은 시설 관리 세 규를 두어 관리한다.

제10장 공간협력위원회

제91조 (지위)

- ① 공간협력위원회는 본회의 중앙동아리 간 공간, 소음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하는 기구이다.
- ② 공간협력위원회는 비상임시기구이다.

제92조 (권한 및 책임)

공간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1. 중앙동아리 간의 공간, 소음 문제를 중재한다.
2. 중앙동아리 간의 공간,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심의·의결
3.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심사하되, 형평성·다양성·상징성 또 한 주요한 근거로 두어 판단해야 한다.
4. 분쟁이 발생한 동아리 회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 (구성)

본회의 회장단,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서장 1인, 각 분과위원장과 각 분과 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중앙 동아리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제94조 (의장)

공간협력위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제95조 (소집)

- ① 공간협력위원회는 제8조1항7호에 의거하여 필요하면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아래 각 호의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공간협력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2. 상임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제96조 (정족수)

공간협력위원회는 의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출석 인원의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97조 (심사 및 운영)

공간협력위원회는 중재해야 하는 중앙동아리들의 대표를 소환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 할 수 있다. 단, 해당 대표는 질의응답이 종료된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제11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8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 위원회)

- ① 선거와 총동아리연합회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정한 중앙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선거가 끝나는 일시까지 한다.
- ⑤ 위원은 입후보된 회장단과 협력할 수 없다.
- ⑥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기본 선거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⑦ 세부 사항은 세규를 두어 관리하며, 세규는 상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9조 (권한)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총동아리연합회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총동아리연합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0조 (선출 사항)

- ① 총동아리연합회 정, 부회장은 중앙동아리 대표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여 중앙동아리 대표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② 과반수의 투표율과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 득표자 2인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 정, 부회장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 ④ 단독 출마 시에는 찬, 반 투표를 거치며 정족수 2항과 같이 한다.
- ⑤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세칙을 두어 진행한다.

제101조 (균등 기회 보장)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02조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03조 (목적)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안정적인 선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설치 기간 동안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할 의무를 가진다.

제104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단의 선거 무산 또는 총동아리연합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본회의 행정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하여 전대 회장단 및 집행부를 승계한다.

제105조 (권한과 책임)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회장단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추가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인준권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집행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원활한 본회의 집행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06조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회장단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7조 (임기)

- ① 후대 회장단이 선출이 된 즉시 해산한다.
- ② 후대 회장단의 선출이 무산될 시, 본회 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제13장 회칙개정

제107조 (발의)

- ① 회칙개정은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제안 당시의 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08조 (회칙 개정안 공고)

제안된 회칙개정안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최소 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9조 (회칙의 공포)

- ① 회칙개정안은 총동아리연합회가 의결한 후 1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붙여 총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총회를 통해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칙개정안이 제1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회칙개정은 확정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원리에 따른다.